

# 소득 증빙 서류 안내

## ■ 소득 증빙 구비서류(신혼부부, 생애최초 특별공급)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원본)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) * '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,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(또는 홈택스), 해당직장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)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 ②, ③ 해당 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※ '근로처별 소득명세' 표상 "주(현)"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, ② 해당직장
	직장 가입자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① 재직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 필수)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에 해당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(사본)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원본, 직인날인)	①, ②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없으면,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② 사업자 등록증	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① 세무서 ② 등기소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③ 재직증명서	① 세무서 ②, ③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	
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	①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재직증명서 ※ 프리랜서의 경우,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원본)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(단,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)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 해당직장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- 분양홍보관 비치 ②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소득 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 분양홍보관 ② 세무서	

## 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

서류구분	확인자격	증빙 제출서류	발급처
자격 입증서류	근로자	① 소득금액증명 원본(원천징수영수증 포함) ② 재직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- 해당직장 - 세무서 - 국세청 홈택스 - 국민건강보험공단
	자영업자	①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(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)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원본 ※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소득세 납부 입증서류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 원본 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 또는 납세사실증명(종합소득세 납부자) ※ 결정세액이 환급확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직인날인)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	- 해당직장 - 세무서 - 국세청 홈택스

※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4.01.26.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"상세"로 발급하여야 합니다.